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5. 4.

.

제 출 자 : 하남시장(건강증진과)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해촉,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2조~제2조의2)

나. 금연지도원의 직무 단독 수행 근거 마련 및 절차 규정(안 제4조)

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직무 단독 수행의 근거,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